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7년 8월 21일

O 회부일자 : 2017년 8월 24일

3. 제안이유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도-시·군간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향후 북한이탈주민수의 증가로 시·군별 자체 지역협의 회 추가 신설이 예상됨에 따라 「충청북도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위원정수 증원
- O 내실 있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방안 논의를 위한 당연직 위원 직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사항

4. 주요내용

O 충청북도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위원정수 확대 및 당연 직 위원 직책 조정 (안 제5조)

5. 검토의견

금번 개정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도-시·군간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향후 북한이탈주민수의 증가로 시·군별 자체 지역협의회 추가 신설이 예상됨에 따라 「충청북도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위원정수를 증원하고, 내실 있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방안 논의를 위한 당연직위원 직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 현재 충청북도의 북한이탈주민은 1,141명으로, 전국 17개시도 중 5위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초기 시군별 지역협의회가 제천 1곳이었다가 지속적으로 지역협의회가 증가하여 현재는 8개 시군에 지역협의회가 존재하고 있음. 따라서 15명으로 되어 있는 충청북도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의 위원 정수를 20명으로 증원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지역협의회 위원장이 6개 시군은 부단체장으로 되어 있어 협의회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당연직 위원의 직책을 실질적인 회의 참석자인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함으로써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됨.

붙 임: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